

서울교육대학교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에서 양자를 통칭하여 “양 기관” 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무형유산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학교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무형유산과 학교 교육 분야 공동 연구, 세미나 개최 등 학술적 교류 활동
2. 무형유산과 학교 교육 관련 교사연구회, 교사 연수, 시범 수업 등을 위한 협력
3.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4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협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6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날인 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5월 12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장신호

장신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직무대행 박규리

박규리